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1357
----------	------

제안년월일 : 2020년 2월 25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주문

- 감염병 등 재난발생시 유동인구 및 매출 급감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운영자들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자들의 피해경감 차원에서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감경해 줄 수 있도록,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 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은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공유재산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지역상인의 피해를 경감해주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감경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경감해주고자 관계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국회 : 행정안전위원회

나. 정부 : 행정안전부

5. 첨부 :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안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일례로,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 중 B상가의 경우 지난 1월 20일 국내 감염자 발생을 전후로 하여 일평균 유동인구가 주중 29.5% 감소, 주말 4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는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표] 지하도상가 유동인구 추이('20.1.20. 국내 감염자발생 전후)

상가명	주중 유동인구(일 평균)			주말 유동인구(일 평균)		
	발생 전 (1.9.~1.15.)	발생 후 (1.30.~2.5.)	증감률	발생 전 (1.9.~1.15.)	발생 후 (1.30.~2.5.)	증감률
A 상가	137,239명	120,623명	△12.11%	107,558명	77,583명	△27.87%
B 상가	22,727명	16,478명	△27.50%	21,767명	12,358명	△43.23%

<서울시 유동인구 측정시스템(IoT 기반) 결과 반영>

-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지역상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지역상인의 피해를 경감해주고자 하더라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감경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운영자인 지역상인의 피해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일정기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0. 2. 25.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

[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u>못하였을</u> 때에는 복구 <u>완료기간의</u>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못하였</u> <u>거나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u> ----- <u>완료기간 또는 피해기간의</u> -----.